

#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5,682,322	14,570,470
일반회계	399,315,703	11,979,471
특별회계	86,366,619	2,590,999
기타특별회계	86,366,619	2,590,999
상수도특별회계	14,494,161	434,8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9,169	19,775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55,270	64,6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51,082	19,532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4,514,923	735,44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02,223	12,067
청사건립특별회계	43,489,791	1,304,69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72,10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 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7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